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금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333

발의연월일: 2020. 7. 23.

발 의 자:양금희·최형두·윤재옥

박성중 • 윤창현 • 전봉민

추경호 • 백종헌 • 윤두현

지성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 의무자를 모(母)로 규정하고, 모의 신고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 동거친족, 분만에 관여한 의사 및 조 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신고하도록 함. 2015년 동법 개정으로 혼인 외 출생자의 부(父)도 모의 신상정보를 모르는 경우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으나, 실무에서는 신상정보를 전부 모르는 경우에만 출생신 고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하여 미혼부가 그 자녀를 출생신 고하는데 있어 여전히 어려움이 있음.

이같이 미혼부의 출생신고가 엄격히 제한되는 것은 현행 「민법」의 친생자 추정 규정 때문임. 모가 법률상 남편이 아닌 자의 자녀를 출생한 경우 친생자추정에 의해 남편의 자녀가 되고, 친생부인의 소(訴)에 따른 확정판결 이후에야 생부가 자녀를 인지하여 친자관계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친생자추정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미혼부의

출생신고를 제한하려는 것임.

이에 「민법」과 더불어 동법을 개정하여 미혼부가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해서도 신고의무자가 되도록 하고, 모의 신상정보를 일부 알더라도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며, 신고의무자인 의사·조산사 등이 간이출생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여 출생현황을 보다면밀히 파악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신설, 제46조, 제57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양금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안번호 제23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 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2를 제44조의3으로 하고,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간이출생증명서의 제출) 의사·조산사나 그 밖에 분만에 관여한 사람은 모가 제44조제4항에 따른 출생증명서 작성을 원하지 않는 경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녀의 성별, 출생의연월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간이출생증명서를 작성하여 출생 후 14일 이내에 출생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의 제목 "(신고의무자)"를 "(신고의무자 등)"으로 하고, 같은 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민법」 제844조에 따른 남편의 친생자의 추정을 받지 않는 혼인 외 출생자의 경우 부가 그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제57조제2항 중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을 "성명, 등록기준지 또는 주민등록번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2항 및 제5 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출생신고 하는 경우부터 적 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 <신 설></u>	제44조의2(간이출생증명서의 제
	출) 의사·조산사나 그 밖에 분
	만에 관여한 사람은 모가 제44
	조제4항에 따른 출생증명서 작
	성을 원하지 않는 경우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
	<u>녀의 성별, 출생의 연월일시 및</u>
	장소를 기재한 간이출생증명서
	를 작성하여 출생 후 14일 이
	내에 출생지를 관할하는 시·읍·
	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의2(출생증명서가 없는 경	제44조의3(출생증명서가 없는 경
우의 출생신고) (생 략)	우의 출생신고) (현행 제44조의
	2와 같음)
제46조 <u>(신고의무자)</u> ① (생 략)	제46조 <u>(신고의무자 등)</u> ① (현행
	과 같음)
②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2
모가 하여야 한다. <단서 신	<u>다만, 「민</u>
<u>설></u>	법」제844조에 따른 남편의 친
	생자의 추정을 받지 않는 혼인
	외 출생자의 경우 부가 그 자녀
	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 제57조(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 한 인지) ① (생 략)
 - ② 모의 <u>성명·등록기준지 및</u>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 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신 고를 할 수 있다.
 - ③ ~ ⑤ (생 략)

제573	조(친생	당자출	생의	신고이	레 의
한	인지)	1 (현행고	나 같음)
2		성명,	등록	기준지	또는
<u>주</u>	민등록	번호의	전투	느 또는	일부
<u> 를</u>					

③ ~ ⑤ (현행과 같음)